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1
----------	----

제출년월일 : '99. 6. 18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89.2.1,조례 제76호)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로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심사회의 심의·의결('98. 11. 17)
- 라. 기타 : 입법예고결과 통기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